자체평가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체평가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9. 7)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 9. 7)

1. '자체평가'라 함은 본교의 비전달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수립된 대학 발전계획과 핵심목표에 따른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체평가'의 범위는 「고등교육법 11조의 2」에 따라 실시되는 '대학자체평가'와 대학의 연차 추진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되는 '학과경쟁력 평가' 및 '행정부서성과평가'를 모두 포함한다.

제3조(평가대상) 평가대상은 호서대학교의 모집단위 및 재학생이 속한 모든 교육편제단위 및 본교 조직도 상의 모든 행정부서와 부서에 속한 구성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7. 9. 7)

1. <삭제 2017. 9. 7>
2. <삭제 2017. 9. 7>
3. <삭제 2017. 9. 7>
4. <삭제 2017. 9. 7>

[제목개정 2017. 9. 7]

제4조(평가분야) 자체평가는 다음의 분야로 나누어 실시한다.

1. 대학 자체평가(대학역량평가)
2. 학과경쟁력평가
3. 행정부서성과평가(KPI)
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본조신설 2017. 9. 7]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7. 9. 7]

제5조(평가시기) ① '대학 자체평가'는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매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 9. 7)

② '학과 경쟁력평가' 및 '행정부서 성과평가'는 대학의 자체적인 연차 추진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7. 9. 7)

[제목개정 2017. 9. 7]

[제4조에서 이동 2017. 9. 7]

[종전 제5조는 제11조로 이동 2017. 9. 7]

제 2 장 대학자체평가(장 변경 2017. 9. 7)

제6조(대학자체평가) 대학자체평가는 본교가 대학 자체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 9. 7]

제7조(평가영역) 대학자체평가의 평가영역은 대학정보공시 내용을 포함한 각 호와 같다.

1. 교육재정 영역
2. 교육여건 영역
3. 학사관리 영역
4. 교수연구 영역
5. 교육성과 영역

[본조신설 2017. 9. 7]

제8조(평가기구) 자체평가의 공정한 시행 및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자체평가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와 자체평가 연구위원회(이하 "연구위원회)를 두며, 평가담당부서에서 실무지원을 한다.

[제목개정 2017. 9. 7]

[제6조에서 이동 2017. 9. 7]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7. 9. 7]

제9조(대학자체평가 기획위원회) ① 평가전반에 대한 기획 및 관리를 위해 기획위원회를 둔다

② 기획위원회는 학사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각 처·실장 및 단과대학장으로 구성한다.

③ 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체평가 기본계획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관련 규정의 제·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지표와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 지표 실적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17. 9. 7]

[종전 제9조는 제21조로 이동 2017. 9. 7]

[제목개정 2017. 9. 7]

제10조(대학자체평가 연구위원회) ① 자체평가의 평가지표·기준 개발 및 세부영역별 평가를 위해 연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위원회는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평가영역별 전문성 있는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자체평가 지표·기준 개발
2. 자체평가 계획과 평가 실시
3.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4. 기획위원회와 총장에게 자체평가 결과 보고
5. 그 밖에 자체평가연구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17. 9. 7]

[제목개정 2017. 9. 7]

제11조(평가결과의 공시 및 활용) ① 자체평가의 결과는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개정 2017. 9. 7)

② 자체평가의 결과는 장단기 발전계획 및 전략 수립, 대학특성화 정책 수립,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연구의 질 제고 등에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7. 9. 7)

[제5조에서 이동 2017. 9. 7]

제 3 장 학과 경쟁력평가(신설 2017. 9. 7)

제12조(학과경쟁력평가) 학과 경쟁력평가는 학과의 경쟁력 향상 및 대학 주요정책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학과의 핵심지표와 주요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 9. 7]

제13조(학과경쟁력평가 평가대상) ① 학과 경쟁력평가의 평가대상은 호서대학교의 모집단위 및 재학생이 속한 모든 교육편제단위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② 학과평가의 대상이 되는 교육편제단위에 대한 세부기준은 평가대상학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획처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9. 7]

제14조(평가방법 및 절차) ① 기획처장은 평가실시 이전 각 평가분야별 평가지표 및 세부기준 등 자체평가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의 재가를 받은 후 평가계획을 확정한다.
② 기획처장은 확정된 영역별 자체평가의 평가지표와 및 세부기준 등 시행계획을 전 부서에 사전 공지하여 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평가는 평가 계획 수립, 평가실시, 평가결과 공개의 절차로 진행된다.
④ 학과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연속성 확보를 위해 평가관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방법은 각 교육단위 제출자료와 핵심평가지표 관리부서의 제출자료를 근거로 판단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그밖에 학과평가와 관련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및 호서대학교 「학칙」에 따라 학과평가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총장의 재가를 받은 후 평가를 실시한다.
[본조신설 2017. 9. 7]

제15조(평가결과의 활용) 학과경쟁력평가의 평가결과는 학과의 주요 정책결정 근거 및 교육단위 구조조정과 학생 정원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9. 7]

제 4 장 행정부서성과평가(KPI 평가)(신설 2017. 9. 7)

제16조(행정부서성과평가) 행정부서 성과평가(이하 '평가')는 교내 행정부서별 업무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KPI(Key Performance Indicator)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 9. 7]

제17조(평가대상) 평가는 정규직원이 배속된 행정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본조신설 2017. 9. 7]

제18조(평가주관부서) 평가는 기획처에서 주관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부서별 KPI 설정 및 조정
2. 부서별 KPI 결과 검증 및 확정
[본조신설 2017. 9. 7]

제19조(평가방법 및 절차) ① 평가는 매학년도 실시하며, 평가 주관부서에서는 매학년도 부서별 KPI를 확정하여 평가대상부서에 통보한다.
② 평가 대상부서는 KPI 결과를 정해진 기한 내에 평가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는 정량지표를 기준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량지표 산출이 불가한 경우 별도의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9. 7]

제20조(평가결과의 활용) 평가 주관부서는 평가 결과를 직원인사 주무부서에 제공하여 직원근무 평정 및 직원인사에 활용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17. 9. 7]

제21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7. 9. 7]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9. 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